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06. 22.

고령군수



1. 공고제목 : 처분 사전통지(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6. 24.(수) ~ 2026. 07. 09.(목)(16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대표자)	부적정 보관 폐기물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근거법령)	비고
주식회사 우성** (195111- 0027***) (사내이사 김명*)	성산면 삼대리 436-10 (부지 내)	부적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 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참여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라의무를 승계한자 등 ※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3고단132 참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 등기우편 2회 반송(폐문부재 등) 후 공시송달 예고를 선택등기를 통해 거소지 수취함 투함

5.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오니 2026.07.09.(목) 까지 고령군 환경과 수질관리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환경과 수질관리팀(☎ : 054-950-6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령군청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	오해성
	주소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번호	054)950-6522
	전자우편주소		berchemia@korea.kr			팩스번호	054)950-6189
	제출기간		2026년 7월 09일(목)				

붙임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